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6 | 2025.08.18 (2025.08.11~2025.08.1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덤프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프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프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0인)**」 ,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문체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에서 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국정기획위원회) 6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11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교육부) 1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3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부) 1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3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14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1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6인) 20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욱의원 등 11인) 2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21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23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23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4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2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5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26
-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금융감독당국의 최근 회계감리 동향 및 유의사항 안내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발표
- [ESG] EFRAG, ESRS 간소화로 지속가능성 보고의 실효성 제고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계획 발표
- [ESG] EU 집행위원회, 중소기업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SME) 채택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배포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2025-08-13
---------	---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고 밝힘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되었음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되었음. 이는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다고 밝힘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
-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한다.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하여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한다.
-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방한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한다.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힘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임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 대통령실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관계부처 합동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2025-08-14

정부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고 밝힘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①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②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③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④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음

①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함.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됨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함.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①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②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5년 말에서 '26년 말까지 1년 연장함.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함

② 공공 SOC 신속집행

올해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26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0.4조원)하여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함.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임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함.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7→4개월)하여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함.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5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함

③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정비함. '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아울러, '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임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4315개→'25569개)하여,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함

④ 공사비 부담 완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음.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5 시행 예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교육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5 시행 예정
-----	-----------------------------	------------------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14 시행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등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업데이트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01-01 시행 예정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으로써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12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산회 등의 민간단체 외에도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12. ~2025.09.22.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tel:044-215-443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2. ~2025.09.22.
---------	---------------	-----------------------------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시에도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 용도변경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 준용 명확화 (제8조제6항)

-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② 사업계획 승인 시 용도변경 의제규정 마련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용도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의제하도록 함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tel:044-203-2871)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14. ~2025.09.23.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①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 규모 설정 (제16조의2)

-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되, 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장은 의무 대상 면적에서 제외

② 설치의무 대상기관 기준 (제16조의3)

- 제도 운영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제도(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동일한 기준을 반영

③ 의무이행방식 명확하게 정비 (제17조의3)

- 의무기관은 주차장에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자가소비형 또는 발전사업형)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부지임대형)으로 의무이행 가능
- 공공기관 설치의무 이행 목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미 주차장에 신재생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용량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간주

④ 설치 전 검토절차 마련 (제17조의2, 부칙 제2조)

- 향후 의무 대상기관의 주차장 신설 시, 주차장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 필요
-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하도록 함

⑤ 설치 후 확인절차 마련 (제18조의2, 부칙 제3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
- 다만, 부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면제되는 시설의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⑥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제30조 제3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계획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업무 위탁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http://www.keri.go.kr) (전화: 044-203-5371, 팩스: 044-203-4769)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5.08.13.
~2025.09.22.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 (안 제2조~제5조)

-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② 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 (안 제6조)

-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

-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④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안 제9조~제18조)

-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공사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http://www.korhpa.go.kr) (전화: 044-201-3414, 팩스: 044-201-5538)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13.
~2025.09.22.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제2조제4항제1호 개정)

-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소규모 증개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②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절차 등 규정 (제8조의4 신설, 제8조제4항, 제18조제1항 등 개정)

- 상호, 소재지, 자본금, 발기인·임원 등 기재한 설립신고서 제출
- 영업인가·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 받되,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규정
- 사업투자보고서의 국토부 정기 보고, 부도·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경우 등에 대한 공시의무 등 규정
- 최저자본금 준비 전 현물출자 방식에 대한 예외, 자산운용 전문인력 규정 등

③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예외 주주 확대 (제12조의3제1호 및 제31호 개정)

- 다양한 공적자금이 리츠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공모예외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국토부장관이 공모예외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 신설

④ 투자자보호를 위한 변경인가 사항 규정 (제42조의2제1항)

- 정관변경 중 주주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익배당, 법인이사에 관한 사항은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

⑤ 과태료 감면 확대 ([별표2] 개정)

-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등 경미한 실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 확대

⑥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적격요건 기준 개선 ([별표3] 개정)

-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지주·명목회사인 경우에는 실질주주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행

⑦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완화 (제24조 개정)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요건 중 필요 자본금 규정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전화: 044-201-3414, 팩스: 044-201-5538\)](tel:044-201-3414)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8.14.
~2025.09.24.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적 항공사의 정기편 신규 노선 허가 시 수행하던 기술검토를 주요 안전성 사전검토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에 정기편 노선 허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정기편 운항 허가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동·하계 정기편 운항에 관한 정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의 확보계획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는 등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전화: 044-201-4216, 팩스: 044-201-5624\)](tel:044-201-42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2025-08-11 발의
현재 현행법(특별배임죄)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배임범죄는 그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 역시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경영진의 회사와 주주를 위한 성실한 경영활동까지도 그 결과를 근거로 배임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큼 그 결과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현행법 개정예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위축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제기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사후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역시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82조의4, 제408조의9)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2025-08-12 발의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동의 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열람뿐만이 아닌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2025-08-12 발의

현행법은 제90조제3항에서 제124조에서 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 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결을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29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2025-08-12 발의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2025-08-12 발의

현행법에서는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 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3인)**

2025-08-12 발의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6인)

2025-08-11 발의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2025-08-11 발의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수입·판매·세울·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8-12 발의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 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025-08-12 발의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21인)

2025-08-12 발의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2025-08-12 발의

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8-13 발의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2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25-08-11 발의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지인·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2조의20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2025-08-13 발의

현행법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단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2025-08-12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그런데 최근 ‘공유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도시 내 유희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공유숙박’이 대중화되면서 현행법에서 정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현재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민박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실거주 의무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안 제73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5-08-11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2025-08-13 발의

현행법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긴급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내에서 희소의료기기와 그 용어가 비슷하여 혼재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음

또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함)에 위탁하고 있음. 시행규칙에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조사 실시와 공급 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원에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을 정보원으로 명시하여**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8호)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025-08-13 발의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행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025-08-11 발의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2025-08-1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2025-08-12 발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역대급 폭우, 돌발성 범람 등이 빈발하며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기존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정비 및 준설을 국가·지방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적·계획적 대응이 어렵고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퇴적물이 누적된 중소하천, 도심하천, 지류 등은 유량 저하와 유속 정체로 인해 폭우 시 범람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부담과 예산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실정임

이에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8/21(목) 10:00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기재위	전체회의	8/19(화) 10:00	- 업무보고(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결산 상정
과방위	전체회의	8/20(수) 10:00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국방위	전체회의	8/21(목) 10:00	- 결산 상정, 현안보고
문체위	전체회의	8/19(화) 10:00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8/19(화) 14:00	- 결산 상정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8/18(월) 14:00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법안 및 청원 상정
환노위	전체회의	8/20(수) 10:00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국토위	전체회의	8/19(화) 10:00	- 결산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18(월) 14:00	소버린·버티컬·피지컬 AI G3, 우리의 길은? : 국민의힘 정책토론회	최형두·신성범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8/18(월) 15:00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염태영·추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8/19(화) 10:00	AI 3G 도약을 위한 6G·AI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황정아·이훈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9(화) 10: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	문대림·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0(수) 14:00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형두·이원택 의원실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8/20(수) 14:00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31차 토론회	한정애·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1(목) 10:00	(베이징 특파원이 목격한 중국의 첨단 기술 총력전) 딥시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한국 AI, 돌파구가 있나?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8/18(월)	「Data+」 제16호(2025-16호) 발간	국회도서관	
	8/20(수)	「World&Law」 2025-9호 발간		
	8/20(수)	「금주의 서평」 제742호(2025-33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11(월)	「팩트북」 제118호(2025-4호) 발간	국회도서관	
	8/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8호(2025-15)호 발간		
	8/13(수)	「금주의 서평」 제741호(2025-32호) 발간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11(월)	금융	금융감독당국의 최근 회계감리 동향 및 유의사항 안내
8/11(월)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발표
8/12(화)	ESG	EFRAG, ESRS 간소화로 지속가능성 보고의 실효성 제고
8/13(수)	금융	월간 기업 · 금융분쟁 뉴스레터
8/13(수)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계획 발표
8/13(수)	ESG	EU 집행위원회, 중소기업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SME) 채택
8/14(목)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배포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